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가단509717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8. 11. 13.

판결 선고2018. 12.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808,156원 및 그 중 86,210,026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3.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9. 접수 제2030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 1) 원고는 2017. 5.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보증원금을 8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5.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7. 6. 2.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3) 피고 B은 2017. 5. 30.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 1) 피고 A가 2017. 12. 1.부터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2017. 12. 30.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86,210,0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598,13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9. 접수 제2030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등기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808,156원(= 대위변제금 86,210,026원 + 법적절차비용 598,1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6,210,02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4. 24.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 5.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제 체결일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원인은 2015. 3.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은 2015. 3. 17.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며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날짜는 2017. 11. 29.로서 위 대여일로부터 약 2년 반이나 지난 시점인 점, 위 2017. 11. 29.은 피고 A가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기 직전인 점, 피고 B은 피고 A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A의 재정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여동생의 남편인바, 피고 C, B은 서로 상의하여 등기원인 서류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을 임의로 소급 기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제 체결일자는 그 등기일인 2017. 11. 2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비록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이틀 후에 피고 A가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한 달 후인 2017. 12.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A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제로 2018. 4. 24.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C의 선의 항변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C이 피고 B에게 실제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과 피고 B은 친족관계로서 서로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가까운 사이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김신영

별지